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추가와 소상공인 전기신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확대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기신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 추가(안 제4조의3)

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안 제4조의4)

전기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시 30일간 제재처분을 유예하
되 소상공인은 90일까지 유예기간 확대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추가(안 제5조의5, [별표 1])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이용범위 규정에 대한 전기사

업법 근거 조항번호 수정(안 제7조의3)

마.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전력
거래소를 추가(안 제6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인력”을 “인력 및 시설”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전기신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1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5제1호의2나목 중 “법 제16조의5제3항”을 “법 제16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각각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5제2항”을 “법 제16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6항제1호 중 “협회”를 “협회, 한국전력거래소”로 한다.

별표 1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송전제약발 생지역전기 공급사업	해당없음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 가를 받은 자로 서, 법 제16조의 5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이 별도로 고시 하는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을 것 1. 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 칙에서 정한 급 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발전 설비 2. 원전, 석탄 등의 저원가 발 전원을 사용 3. 법 제27조의 2에 따른 「전력 계통 신뢰도 및	해당없음
---------------------------------	-------------	---	-------------

		전기품질 유지 기준」에 의거 하여 수립된 전 력계통 운영방 안 등에서 지역 별 발전기 출력 제약에 포함된 발전기	
--	--	---	--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별표 1에 따른 <u>인력</u> 의 보유 현황 <u><신 설></u>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인력 및 시설</u> ----- <u>제4조의4(전기신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1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u>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 ----- -----.

1. (생략)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생략) 나. <u>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u> 다. (생략)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u>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 8. (생략)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u>법 제16조의5제2항에</u> 따	1. (현행과 같음) 1의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u>법 제16조의5제4항-----</u> -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u> 다. (현행과 같음) 2. ----- ----- ----- -----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또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u> ----- ----- 2의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 ---- <u>법 제16조의5제3항-----</u>
---	--

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1.·2. (생략)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⑤ (생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 협회, 한국전
력거래소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3 - 3904 (044) 203 - 3908